

방부제를 함유한 화장품의 라벨에 표시하는 경고 문구에 관한

화장품위원회 공고(제5호)

불기 2567년(서기 2024년)

불기 2558년(서기 2015년) 화장품법 제22조 세번째 단락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화장품위원회는 2024년 8월 26일 개최된 제4/2024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제1조 본 공고는 관보에 공표된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불기 2561년(서기 2018년) 9월 24일자 방부제를 함유한 화장품의 라벨에 표시하는 경고 문구에 관한 화장품위원회의 공고(불기 2561년) 부록의 항목 30을 삭제하고 다음과으로 대체한다.

| 번호 | 방부제의 명칭 | | | 라벨에 표시하는 경고 문구 |
|-----|---|----------------|------------|---|
| | 화학명/ 다른 명칭 | 일반 성분 용어 명칭 | CAS 번호 | |
| "30 | 1-(4-클로로페녹시)-1-(이미 다졸-1-일)-3,3-다이메틸부탄 -2-온 (1-(4-Chlorophenoxy)-1- (imidazol-1-yl)-3,3- dimethylbutan-2-one) | Climbazole | 38083-17-9 | - 클림바졸(Climbazole) 함유. -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제품 사용 후 자극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 와 상담하십시오." |

제3조 본 공고에 의해 개정된, 불기 2561년(서기 2018년) 9월 24일자 방부제를 함유한 화장품의 라벨에 표시하는 경고 문구에 관한 화장품위원회의 공고(불기 2561년) 부록의 항목 30에 해당하는 방부제를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화장품 신고증을 취득한 판매용 제조자, 판매용 수입자 또는 위탁제조자가 취급하는 제품 중 본 공고 시행일 이전에 라벨이 이미 제작된 화장품에 대하여는, 본 공고의 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에 따라야 한다.

2024년 12월 20일 공고

몬티엔 카나사와스드

보건부 차관보

보건 서비스 지원분야 총괄책임자

화장품위원회 위원장